

# 종교인소득 과세제도

김광용  
백석예술대학교 경영행정학부 조교수

## A Study on the Taxation of the Clergy's Income

Kwang-Yong Kim

Division of Management Administration Assistant Professor, Baekseok Arts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2018년부터 시행되는 소득세법상 종교인소득 과세와 관련한 법률규정과 주요 쟁점에 대하여 검토해 보고, 이에 대한 올바른 개선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종교인소득 과세와 관련된 찬성론과 반대론에 대한 내용을 재검토하고 과세제도의 기본방향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종교인소득 과세제도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주요쟁점 사항을 분석적 검토를 통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결과는 첫째, 종교인소득을 근로소득의 별도 항목으로 규정하는 것이 법체계적 측면이나 실질적인 측면에서 최선의 방안이 될 것이다. 둘째, 필요경비 공제를 적용에 있어서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종교인의 소득에 대한 정확하고 투명한 신고가 요구되므로 원천징수 의무를 강제하는 방안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종교 활동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종교단체의 전체 수입과 지출에 대한 내용을 외부에 공시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현행 종교인소득 과세제도와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한 연구로써, 종교인소득 과세와 관련된 논의의 출발점과 기초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관련분야 연구에 실무적인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주제어 : 종교인 과세, 기타소득, 근로소득, 원천징수, 필요경비, 세무조사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legal regulations and major issues related to income taxation of religion in the income tax law enacted from 2018, and examines the right improvement metho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an improvement plan through the analytical review of the legal issues related to the income of religion in 2018 and the main issues of taxa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is the best way to define religious income as a separate item in earned income. Second, it is the best way to apply the deduction system for earned income in the application of deductible expenses. Third, precise and transparent reporting on income of religious persons is required, and a measure should be enforced to impose withholding tax obligations. Fourth, in order to restore transparency and reliability of expenditure related to religious activities, it should be expanded to submit details of total income and expenditure of religious groups.

This study provides practical implications for the related field research by providing the starting point and basic data of the discussion on the income taxation system of the religious person.

**Key Words** : Clergy's income tax, Other income, Earned income, Withholding, Necessary expense, Tax investigation

\*Corresponding Author : Kwang-Yong Kim(kky2009@bau.ac.kr)

Received May 30, 2018

Accepted August 20, 2018

Revised July 20, 2018

Published August 28, 2018

## 1. 서론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종교인소득 과세는 1968년 논쟁이 처음 시작된 지 50년 만에 과세가 이뤄지는 것이다. 2013년 11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종교인의 소득을 기타소득 중 하나인 '사례금'에 포함시켜 2015년 1월부터 과세하기로 하였으나 과세에 대한 정당성 및 방식에 대한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해 종교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방법을 규정한 소득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보류되었고, 시행령만 개정된 상황이었다.

2015년 소득세법 개정을 통하여 기타소득 중 하나인 '종교인소득'항목을 신설하였고, 공제 및 소득수준 별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하여 종교인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의 토대를 마련하였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종교인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고소득 종교인의 세금부담을 감소시키고, 저소득 종교인의 사회복지 혜택과 지원을 막아 종교인간 소득수준별 형평성을 악화시킨다. 또한 종교인소득은 종교인이 종교단체에 소속되어 정기적으로 지급 받는 보수의 성격으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기타소득과 성격이 상이하고, 소득세법상 종합소득 분류체계와도 상이하다. 궁극적으로는 종교단체에 대한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회계처리기준 및 감사기준 제정을 통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1].

본 연구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종교인소득 과세와 관련된 찬성론과 반대론에 대한 내용을 재검토하고 과세제도의 기본방향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종교인소득 과세제도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주요쟁점 사항을 분석적 검토를 통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종교인소득 과세와 관련한 법률규정과 주요쟁점 사항을 검토하는 연구로, 종교인소득 과세제도 시행에 따른 논의의 출발점과 기초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이와 관련한 연구에 공헌할 것으로 기대되어 진다[2]. 본 연구의 제2장에서는 종교인소득 과세에 대한 법률규정을 살펴보고, 제3장에서는 종교인소득 과세에 대한 선행연구와 주요쟁점 사항을 고찰해 본다. 이어서 제4장에서는 본문에서 논의된 내용을 정리하여 결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 2. 이론적 배경

### 2.1 종교인의 정의 및 종교인소득 구분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종교인이란 직·간접으로 종교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종교인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종교관련 종사자를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관련직으로 분류하여 성직자와 기타 종교관련 종사자로 구분하고 있다. 성직자는 종교예식이나 의식을 집행, 관장, 교리의 해설과 설교를 담당하고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목사, 신부, 승려 등이 있고, 기타 종교관련 종사자는 해당 종교의 구성원으로 성직자를 보조하고 제반 종교적 활동을 수행하며, 수녀, 수사, 전도사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종교인 또는 성직자들의 경제활동은 개인적으로 종교단체나 법인을 운영하거나 실제로 그 단체에 소속되어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교회나 사찰 등을 설립하게 되면 개인사업자와 같이 일정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종교단체를 운영하게 되고 이를 통해 소득을 창출하게 된다[3]. 또한 교회나 사찰에 소속되어 해당 업무를 하는 경우 근로자와 비슷하게 매월 일정한 보수를 얻게 된다. 이밖에도 저술활동이나 외부강연을 통하여 일시적인 소득을 얻는 경우도 있다[4].

종교인소득 과세와 관련하여 제기된 중요 쟁점은 종교인소득을 소득세법상 소득분류 중 어떤 소득으로 과세하느냐로, 과세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근로소득으로 보고, 이해당사자인 종교인들의 입장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부분이다. 종교인들은 자신의 소득을 근로자들이 생계유지를 위한 소득과 동일한 것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 종교인 소득에 대하여 종교단체와 종교인들은 봉사에 대한 '사례금'이라고 주장하고, 실제로 종교인 소득에 대한 입법화 과정에서 과세당국은 종교인들의 주장을 일정부분 수용하였다. 기존 소득세법에 사례금 항목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있었으므로 봉사에 대한 '사례금' 성격인 종교인 소득을 기타소득의 일부라 간주하고, 기타소득에 종교인소득을 추가하였다[5].

### 2.2 종교인소득 과세에 대한 선행연구

종교인소득 과세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소득세법상 종교인소득의 과세 관련규정에 대하여 대체로 일관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박중영(2015)은 종교인 소득에 대한 비과세는 조세형평성을 침해하고 조세정의를 저해하여 비종교인과 종교인이 아닌 비영리기관 종사자를 역차별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은 고소

득 종교인의 소득을 줄이고 저소득 종교인의 사회복지혜택을 제외시켜 종교인 간의 수직적 형평성을 악화시킨다고 하였다. 따라서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종교인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변경하고, 종교단체의 원천징수의무가 강제되어야 하며, 장기적으로 종교단체 대하여 통일된 회계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회계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6].

박승식과 박상연(2016)은 2018년 시행 예정인 소득세법을 검토하면서 개정소득세법 내용 중 종교인 소득의 과세관련 논란과 소득세 입안과정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소득세 분류의 정상화, 종교단체의 원천징수의무 예외 배제와 종교단체의 회계투명성 제고 등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5].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종교인소득에 대한 과세 찬성론 및 반대론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과세 찬성론에 따르면 국민개세주의에 따라 모든 국민은 세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헌법에서도 납세의 의무를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는 집단에 대해서도 세금을 징수해야 한다[7]. 특히, 김기명(2015)에 따르면 한국의 전체 종교인 중 80%가 극빈층으로 분류되는 실정이다. 따라서 극빈층에 해당하는 종교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종교인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분류 및 과세함으로써 사회보장보험 등 사회적 보호시스템의 혜택을 받게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8].

반면, 과세반대론에서는 교인들이 소득세를 이미 납부한 현금을 재원으로 종교인의 소득이 발생하므로 하나의 소득에 대하여 이중으로 과세할 수 없다고 주장 한다. 또한 종교인은 소득을 얻은 목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 사명감을 가지고 봉사를 하여 그 대가로 사례금을 받는데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급여를 받는 것과 다르다는 것이다. 특히, 종교인 과세는 부당한 세무조사 등을 통하여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으며, 종교인 비과세의 관행이 관습법으로 확립되었으므로 비과세가 지속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9].

이와 관련하여 박승식과 박상연(2016)은 종교인 소득을 근로소득의 특정 세무항목으로 규정해야 하는 방안의 근거를 제시하였다. 즉, 종교인 소득은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성격이므로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임시적이고 비반복적인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종교인 소득을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 소득분류별 조세부담수준 차이에 의한 조

사회피를 허용하므로 종교인에게 특혜를 제공하게 된다는 것이다[5].

정유석(2016)은 2018년 시행 예정인 소득세법이 종교인의 소득유형과 소득수준에 따른 불합리한 조세부담을 유발한다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가상사례를 통하여 종교인의 소득이 기타소득과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에 각 소득세 부담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소득유형별 수평적 불공평과 종교인 소득수준별 수직적 불공평을 확인하였다[10].

Hong et al.(2016)은 세무전문가의 특성에 따라 한국의 종교인소득 과세제도에 대한 의견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세무관련 실무종사자 집단에서 종교인소득에 대한 과세를 찬성하는 성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또한 세무관련 실무경력이 많아질수록 종교인과 비종교인을 동일하게 과세해야 한다는 의견이 뚜렷했다. 반면 세무전문가의 종교적인 믿음과 신앙심이 강할수록 종교인소득에 대한 과세를 반대하는 성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1].

본 연구는 종교인 소득 과세반대론과 찬성론의 검토를 통하여 현행 종교인 소득 과세제도를 이론적으로 뒷받침하고, 향후 소득세법의 개선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성이 있다.

## 2.3 종교인소득 과세에 대한 법률 규정

2015년 12월 2일 국회는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를 도입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고, 2017년 12월 26일 시행령 개정안과 제입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종교인소득에 대한 과세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12,13].

### 2.2.1 과세대상 소득

종교단체에 소속된 종교 관련 종사자가 종교예식 또는 종교의식을 집행하거나 관장하는 등의 활동과 관련하여 받은 소득을 기타소득 중 종교인소득으로 구분하여 법률에 명시하고, 종교인소득 중 학자금, 식사 또는 식대 및 교통비 등 실비변상적 성격의 소득을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종교인소득 과세대상 종교단체의 범위를 종교 목적 비영리법인 및 그 소속 단체로 규정하여 법인이 아닌 종교단체 소속 종교인에 대해서도 종교인소득 과세가 적용될 수 있도록 종교단체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종교인소득과 관련해서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종교활동비가 종교인 개인소득인가 아니면 종교단체의 공금인가 하는 것이다. 종교 관련 종사자가 소속 종교단체의 규약 또는 소속 종교단체의 의결기구의 의결, 승인 등에 의하여 결정된 지급기준에 따라 종교 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액 및 물품, 즉 종교활동비는 비과세 소득이다. 다만, 종교활동비를 종교단체 통장에 공적으로 관리 사용하지 않고 종교인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종교인 개인통장으로 입금하여 사용하게 한 경우에는 지급명세서에 그 금액을 기재하여야 비과세 소득이 된다.

### 2.2.2 소득신고 선택

종교인소득은 기타소득의 종교인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할 수 있다.

종교인들의 소득을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의 종교인소득으로 신고를 해도 국세청에서 지급하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대상이 된다.

### 2.2.3 신고납부 방법

종교단체는 종교인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이행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첫째, 종교단체가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 종교인에게 매월 소득 지급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다음 해 2월 분 소득 지급시 연말정산을 하여야 한다.

둘째, 종교단체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종교인이 다음 해 5월에 종교인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직접 하여야 한다.

### 2.2.4 질문조사권

종교인소득에 대해서는 종교단체의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 중에서 종교인소득과 관련된 부분에 한하여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종교단체가 소속 종교 관련 종사자에게 지급한 금액 및 물품과 그 밖에 종교 활동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정당하게 구분하여 기록·관리하는 경우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소득세법 제170조에 따라 질문·조사할 때 종교단체가 소속 종교 관련 종사자에게 지급한 금액 및 물품 외에 그 밖에 종교 활동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구분하여 기록·관리한 장부 또는 서류에 대해서는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없다.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종교인소득에 관한 신고내용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어 소득세법 제170조에 따라 질문·조사권을 행사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를 안내하여야 한다.

## 3. 종교인소득 과세에 대한 주요쟁점

### 3.1 종교인소득의 구분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소득세법에서는 종교단체에 소속된 종교 관련 종사자가 종교예식 또는 종교의식을 집행하거나 관장하는 등의 종교활동과 관련하여 받은 소득을 기타소득의 '종교인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종교인소득 중 학자금, 식사대, 자녀보육비, 사택제공이익, 실비 변상적 성격의 비용 등은 비과세로 규정하고 있다. 단, 종교인의 소득에 대하여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것은 일부 종교단체에서 과거부터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것에 대한 과세당국의 배려라고 할 수 있다. 이상의 결과 기타소득의 '종교인소득'으로 인정하고,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 후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상의 논의와 관련하여 종교인소득을 근로소득 중의 특정 세부 항목으로 규정하는 개선방안에 대해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법체계적, 실질적인 측면에서 근로소득 중의 특정 세부 항목으로 규정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사료된다. 종교인소득을 소득세법상 소득 분류 중 가장 유사한 소득이라 할 수 있는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규정한 것은 종교인소득을 일반 근로소득과 동일하게 여기는 것에 대한 종교인의 비판적 의견을 과세당국이 수용한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은 일시적이고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정하고 있고, 계속적이고 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법체계상으로 볼 때 소득을 구분하여 파악하는 법률적 취지를 고려하여 가장 적절한 소득인 근로소득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 진다[7]. 또한 기타소득의 종교인소득으로 분류하는 경우가 근로소득으로 분류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조세부담 측면에서 경감효과가 크다는 비판 때문에 필요 경비에 대한 인정비율을 종교인소득의 경우 80%가 아닌

소득구간별 공제율이 차등 적용되는 것으로 개정하였다. 이와 같이 계속된 세법 개정을 통하여 종교인소득 과세에 대한 소득세법의 최초 입법취지와는 다른 방향, 즉 근로소득자와 비슷한 수준의 조세부담이 되도록 개정되었다. 이것은 기본 형식만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실질적으로는 근로소득과 유사한 과세 방법 및 과세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종교인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에 대한 종교인의 거부감을 무시할 수 없다면,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으로 규정은 하되 별도 규정을 두어 일반적인 근로소득과는 차별적임을 강조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기타소득 중 별도의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소득의 구분 기준상 가장 유사한 근로소득 중 별도 항목으로 규정하는 것이 법체계적 측면이나 실질적인 측면에서 최선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종교인소득에 대한 신고의 경우 조세부담수준 차이로 인한 조세회피 현상이 예상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근로소득 중 별도 항목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사실상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중 하나로 선택할 수 있게 하였다. 이는 납세자 입장에서 절세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게 될 것이고, 이는 조세회피 행위로 유인될 가능성이 크다. 근로소득자 입장에서는 종교인에 대한 혜택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14]. 종교인소득을 근로소득 중 별도 항목으로 개정하여 논란의 여지를 제거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 3.2 근로소득의 필요경비율로 일원화

2014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종교인의 소득을 기타소득의 별도 항목인 '사례금'의 일부 항목으로 분류함으로써 최대 8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개정으로 근로소득자들에 대한 과세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2015년 필요경비에 대한 공제율을 소득구간별로 차등하여 적용하도록 소득세법을 개정하였다. 이는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구간별로 소득공제를 하는 것과 비슷한 과세체계를 맞춤으로써 근로소득자와의 과세형평성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로 생각된다[5]. 그런데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종교인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분류하지 않고 기타소득으로 분류함으로써 인해 나타난 것으로, 종교인소득에 대한 과세 과정에서 추가적인 논란의 문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궁극적으로는 근로소득공제의 공제율 수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하지 않고서는 계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6]. 과세당국이 과세형평성 차원에서 근로소득공제와 동일한 수준으로 필요경비에 대한 공제율을 조정할 것이라면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 관련 과세 법체계를 혼란스럽게 할 것이 아니라, 종교인소득에 대한 필요경비 공제율 적용에 있어서 근로소득공제 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사료된다.

### 3.3 원천징수와 근로소득장려세제

현행 소득세법상 종교단체가 지급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의 종교인소득으로 인정하여 원천징수하거나 종합소득으로 신고하도록 하였다. 다만, 종교인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를 강제사항으로 규정하지 않고 선택사항으로 하여 종교단체에서 원천징수하지 않는 경우 종교인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하였다. 이하에서는 원천징수 의무의 선택 적용과 근로소득장려세제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첫째, 과세당국에서는 종교인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와 관련된 이행사항과 내용을 종교인 본인이 신고하기 전까지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즉, 종교인의 자발적인 신고납부에만 의존해 관련 내용을 파악해야 하는 상황으로써, 과세당국과 납세자간의 잠재적인 충돌이 예상되는 부분이다[15].

둘째, 근로소득장려세제를 도입하여 일정기간 동안 일정규모 이상의 소득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익년도 5월의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이 끝난 후 당해 납세자에게 근로소득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각 납세자의 정확한 소득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 종교단체들이 지급하는 보수에 대해서도 투명한 관리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대부분이 극빈층에 속해 있는 종교인들에 대해 사회적 안전망의 하나인 근로소득장려세제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서 종교단체들이 지급하는 종교인소득에 대한 정확하고 투명한 신고가 요구되어진다.

셋째, 종교단체 자금 흐름의 신뢰성과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수입과 지출에 대한 보고가 정확하고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유인책이 필요하다. 현재도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등 비영리법인의 재무제표 공시를 의무화하는 현행 법규가 존재한다. 따라서 이를 확대 적용하여 종교단체도 재무제표를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록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는 재무제표 공시를 의무화함으로써 종교단체의 회계투명성을 개선할 수 있으며, 세무당국이 종교단체에 대하여 공익성 심사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16].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원천 징수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 원천징수를 이행하는 종교단체 및 종교인 소득을 수령하는 종교인들에게 일정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17]. 이상의 검토 결과를 근거로 할 때, 종교인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강제로 의무화하는 방안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 3.4 세무조사의 방식, 범위

2018년 1월 1일 시행되는 소득세법상 종교인소득에 대한 납세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되는 세무당국의 조사에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종교단체는 소속 종교인에게 지급한 금품 등과 그밖에 종교 활동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구분하여 기록·관리하게 하여 종교인소득 세무조사가 종교인소득회계에 한정될 수 있도록 종교단체회계와 종교인회계를 구분 기장하는 선연적 규정을 마련하였다[18]. 그리고 종교인 소득 관련 세무조사 시, 종교단체가 소속 종교인에게 지급한 금품 외의 종교 활동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구분하여 기록·관리한 장부 등은 조사대상이 아님을 명시하였고, 종교인소득에 대한 질문·조사권을 행사하기 전에 수정신고를 우선 안내하도록 하여 자기시정 기회 부여하였다.

종교계는 종교활동비 신고와 세무조사를 추가함으로써 ‘종교활동 감시’와 ‘종교자유 침해 과세’ 의도를 드러냈다”면서 2018년 1월 1일 시행되는 소득세법에 대한 조세저항을 예고하였고, 일반 시민단체들도 종교인들에게 지나친 특혜를 주고 있다며 역시 반발하고 있다. ‘종교인 회계’와 ‘종교단체 회계’를 구분하고 세무조사 면제를 받도록 한 것은 조세형평성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비과세 항목을 종교단체가 결정하고 비과세 한도 또한 없는 것은 차별적 요소라는 입장이다.

## 4.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2018년 1월 1일 시행되는 소득세법상 종교인소득 과세제도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고, 종교

인소득 과세에 대한 주요 쟁점에 대하여 분석하여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득세법에서는 종교인소득을 기타소득 중 하나의 항목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종교인이 소득 신고시 기타소득과 근로소득으로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을 고려하여 이를 근로소득 중 새로운 소득항목으로 신설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종교인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소득크기에 따라 구간별로 달리 적용하여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종교인소득의 경우 근로소득과 비교하여 훨씬 더 많은 필요경비를 인정하고 있다. 향후에는 근로소득자와의 과세형평성을 고려하여 근로소득 공제 수준으로까지 필요경비를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17]. 종교인소득에 대한 필요경비 공제를 적용에 있어서 근로소득공제 제도 자체를 원용하여 적용하는 방법이 최선의 대안이 될 것이다.

셋째, 2018년 1월 1일 시행되는 소득세법에서는 기타소득의 종교인소득 또는 근로소득 중 선택하여 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종교단체는 소속된 종교인에게 지급하는 종교인소득 또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매월 원천징수 및 다음 해 2월 소득지급시 연말정산을 하여야 한다. 종교단체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종교인이 다음 해 5월에 종교인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직접하여야 한다. 이는 종교인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선택하지 않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여 원천징수 의무자를 역으로 차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법은 모든 적용대상에게 일관되고 공평하게 적용되어야만 하며,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현행 제도는 오히려 조세저항을 유발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원천징수하는 하는 종교단체에 대하여 원천징수 이행과 관련한 유인책을 점진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이다.

넷째,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종교단체에 대한 과세당국의 조사 범위를 종교인소득과 관련된 장부, 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 중에서 종교인소득과 관련된 부분에 한하여 조사하거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그리고 종교인소득에 관한 신고내용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어 질문, 조사권을 행사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를 안내하여야 한다. 이는 종교단체 종교활동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도 회계처리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종교단체 전체 수입과 지출에

대한 내역을 외부에 공시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19].

이는 종교단체의 재무제표 공시를 의무화함으로써 회계투명성을 개선할 수 있으며, 세무당국이 종교단체에 대하여 공익성 심사 제도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20].

본 연구는 2018년 1월 1일 시행되는 소득세법상 종교인소득 과세 제도를 검토해 보고 이에 대한 올바른 개선 방안을 제시한 연구로서, 소득세법상 종교인소득 과세제도에 대한 이론적인 토대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종교인소득 과세제도와 관련된 논의의 기초 자료를 제공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21]. 그러나 본 연구는 이상과 같은 연구 성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갖는다[22,23].

첫째, 본 연구는 이론적 측면의 분석만을 함으로써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둘째, 종교인소득 과세제도의 실제 운영에 대한 효과는 여러 관점과 요인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는데 이에 대한 통제를 충분히 하지 못하였다[24]. 향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의 이러한 한계점들을 개선하여 지금보다 세밀한 분석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 된다.

REFERENCES

[1] Y. C. Kim & S. I. Hong. (2013). Problems of local tax exemption for religious organizations. *Korea Tax Research*, 13(1), 205-231.

[2] H. Y. Kim & S. Y. Song. (2017). A Study of Policy Direction on O2O industry developing,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5(5), 13-25.  
DOI : 10.14400/JDC.2017.15.5.13

[3] K. C. Lee. (2016). *Some thoughts on the tax liability of the ministry*. Master dissertation. Hanshin University, Gyeonggi-do.

[4] W. J. Lee. (2011). A Study on the Taxation System for the Religious Organization and clergy. *Tax and Law*, 4(S), 59-87.

[5] S. S. Park & S. Y. Park. (2016). A Study on the Income Taxation of Clergy. *Korean Business Education Review*, 31(2), 371-389.  
DOI : 10.23839/kabe.2016.31.2.371

[6] J. Y. Park. (2015). A Study on the Taxation of the Clergy's Income -Focusing on the Tax Equity Issue by

the Taxation of Other Income-. *The Journal of Korea Tax Accounting Research*, 45, 147-171.

[7] K. Y. Kim. (2013. 11. 4). Other income classification for religious people, *equitable taxation. KERI Column*, 11, 1-2.

[8] K. M. Kim. (2015. 11. 2). *Taxation of religious people. News of Tax accountant*. <http://webzine.kacpta.or.kr/>

[9] J. J. Kim. (2014. 1. 27). The implementation of the taxation obligations of Korean Christianity through the Religious Other Income Taxation Act. *The Christian Institute for the 3rd Era 170th Monthly Forum*, 3-4.

[10] Y. S. Jeong. (2016). Analysis of the Tax Burden and Tax Equity according to Income Type and Income Level on Revisions of Clergy's Income Taxation. *Korean Business Education Review*, 31(4), 523-543.  
DOI : 10.23839/kabe.2016.31.4.523

[11] K. Y. Hong, K. S. Kim & S. M. Yoon. (2016). Tax Justice vs. Religious Belief: The Effects of Tax Professional's Characteristics on the Legislation of Clergy Taxation. *Social Sciences*, 11(21), 5184-5190.

[12] The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2018), *Income Tax Act*. <http://www.law.go.kr>

[13] The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2018),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 <http://www.law.go.kr>

[14] M. S. Bae. (2015. 12. 27). Income tax of religious people, how much. *The Herald Business*, 10.

[15] C. R. Park. (2016). The Factors that Influence on Income Taxpayers Withholding Tax Payment. *Korean Accounting Journal*, 25(4), 365-392.

[16] The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2018), *Social welfare corporations and social welfare facilities Financial and accounting rules*. <http://www.law.go.kr>

[17] Y. S. Jeong. (2015). Analysis on Tax Burden Effect according to Earned Income Tax Deduction System. *Korean Business Education Review*, 30(5), 91-116.  
DOI : 10.23839/kabe.2015.30.5.91

[18] B. S. Noh & W. C. Lee. (2011). A Study on the Accounting System and Tax System for Religious Organizations in Korea. *Korean Business Education Review*, 26(4), 285-313.  
DOI : 10.23839/kabe.2011.26.4.285

[19] W. Park & N. C. Kang. (2015). Accounting Transparency Effects on Relation between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Firm's Value. *Korean Business Education Review*, 30(3), 21-49.  
DOI : 10.23839/kabe.2015.30.3.21

[20] T. H. Cho, Y. N. Jee & H. Yuk. (2018). A Study on the

Validity of Opposing Opinion on Income Taxation of Clergy and the Improvement on Related Income Tax Laws. *Global Business Administration Review*, 15(2), 25-54.

- [21] S. H. Ok & K. T. Hwang. (2017).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the Korean Internet Bank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5(12), 111-126.  
DOI : 10.14400/JDC.2017.15.12.111
- [22] Y. R. Ryu, S. H. Ji & G. R. Lee. (2017). A Study on the Relevance between Auditing Quality and Book-Tax Difference Variability.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8(1), 187-193.  
DOI : 10.15207/JKCS.2017.8.1.187
- [23] Y. R. Ryu, S. H. Ji & G. R. Lee. (2018). A Study on the Relevance between 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 and Book-Tax Difference.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9(2), 183-190.  
DOI : 10.15207/JKCS.2018.9.2.183
- [24] D. H. Jang. (2017). Analysis of the Focal Issues on the Digital Textbook Policy and Exploration for the Improvement of the Policy,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5(8), 15-23.  
DOI : 10.14400/JDC.2017.15.8.15

김 광 용(Kim, Kwang Yong) [정회원]



- 2002년 2월 : 경기대학교 회계학과 (경영학석사)
- 2007년 8월 : 경기대학교 회계학과 (경영학 박사)
- 2009년 3월 ~ 현재 : 백석예술대학교 경영행정학부 세무회계전공

조교수

- 관심분야 : 재무회계, 관리회계, 회계정보시스템, 비영리회계
- E-Mail : kky2009@bau.ac.kr